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한 국토교통부의 지원 건의안

의안 번호	1677
----------	------

제안년월일 : 2017년 2월 24일

제안자 :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1. 주 문

- 국가에서 지정한 공원이 장기간 미집행될 경우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공원시설 결정 실효가 2020년 7월로 다가왔음.
- 공원구역 해제시 개발에 노출되어 도시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공원구역 유지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건의함.

2.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게 됨.
- 효력이 실효되는 날은 2020년 7월 2일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해제될 경우 개발에 노출 되어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주요 녹지가 훼손 될 가능성이 크므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서울의 경우 도시환경을 더욱 더 악화시키게 됨으로써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
- 1994년 이후 공원관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시민에게 공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보상재원 확보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확보가 부족하여 중앙정부의 국비지원과 더불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기타사항: 없음

4. 이 송 처

- 가. 국 회 : 국회의장
- 나. 정 부 :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한 국토교통부의 지원 건의안

2020년 7월이 도래하면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실효되며,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96%를 차지하는 공원은 이 시기까지 보상하지 못할 경우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공원에서 해제될 경우 개발에 노출 되어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주요 녹지 및 임야가 훼손 될 가능성이 크므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서울의 경우 도시환경을 더욱 더 악화시키게 됨으로써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공원의 조성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시민에게 공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보상재원 확보노력과 더불어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는 부족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1조 7,495억원의 예산으로 공원용지 보상을 실시하여 공원을 확충해 왔다. 특히 2016년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원 해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보상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70% 증가(1,018억원)한 예산을 확보하였다. 향후 서울시에서는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원 실효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개인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뿐 만 아니라, 국·공유지까지도 실효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면적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실효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원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상 1994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공원업무가 이관될 때 국유지의 소유권도 이전되었어야 했으나, 서울시의 경우 1970년 이전에 국가에서 지정한 공원 71개소 중 국유지 면적은 35.6km²로 여

전히 소유권은 중앙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양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 정부는 미집행 공원 중 국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공원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업무이관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중앙정부가 지정한 공원용지의 보상은 국비를 지원한다.

하나, 사유권 침해로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는 사유지에 한해 집행한다.

하나,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하여 공원용지로 유지하도록 한다.

2017.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